학교법인 대우학원 정관시행규정

제정 1992, 10, 5 1992, 11, 25 개정 개정 1995, 11, 29 개정 1997. 2. 11 개정 2000. 6. 13 개정 2001. 8. 24 개정 2004. 4. 23 개정 2006. 2. 17 개정 2007. 4. 10 개정 2007. 12. 28 2008. 12. 30 개정 개정 2011. 5. 24 2011. 8. 23 개정 개정 2012. 5. 22 개정 2013. 10. 18 개정 2015. 2.16

- 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학교법인 대우학원(이하 "법인"이라 한다) 정관 제98조의 규정에 따라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 (재산의 관리) ① 법인의 모든 재산의 관리 책임자는 이사장이 된다. 다만, 각급 학교에 속하는 교육용 기본재산과 보통재산(이하 "교육용 재산" 이라 한다)은 당해학 교의 장이 관리·보존한다.
 -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용 재산을 보존·관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대하여는 시행이전에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 - 1. 교육용시설의 구조변경에 관한 사항
 - 2. <삭제>
 - 3. <삭제>
 - 4. 법인 이사장 명의로 된 전화, 차량, 보일러 등의 철거·매각에 관한 사항
 - 5. <삭제>
 - 6. 교육용 재산의 임대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(개정 2013.10.18)
 - 7. 가건물 설ㆍ폐에 관한 사항
 - 8. 기타 이사장이 법인 관리 · 운영에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제3조 (재산의 취득) 정관 제6조 제2항에서 규정한 기본재산 중에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2호와 동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되는 시설과 설비도 포함되며, 이의조성과 확보전에 그 시설과 설비의 규모, 시설의 위치, 소요액등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- 제4조 (회계) 법인 및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학교법인 대우학원 예산 및 회계규정에 따라야 한다.

- 제5조 (임원의 실비변상) 정관 제20조 제2항 및 제22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이사 및 감사에게 거마비, 출장비 및 조사연구비를 실비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,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. (개정 2011.5.24)
- 제6조 (위임직제 및 직능) ①이사장의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 제13조 제2항에 의거 상임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법인의 이사 중에서 이사장이 임면한다. ②상임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고 이사회 및 이사장이 위임하는 바에 따라 법인의 업무를 관장하며, 기타 정관 및 제 규정 등에 규정되어진 임무를 수행한다.
- 제7조 (설치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) 정관 제24조 제2항 제6호에서 규정한 "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"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.
 - 1. 학생정원의 증감
 - 2. 신규임용 교원의 채용 계획 (신설 2011.8.23)
 - 3. 학교의 기구 및 직제의 신설·조정·폐지에 관한 사항
 - 4. 학교의 시설·설비에 관한 사항
 - 5. 기타 학교의 경영에 관하여 이사회의 심의 · 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- 제8조 (수익사업의 종류) 정관 제39조 제1호에 규정한 부동산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.
 - 1. 부동산 임대업
 - 2. 부동산 매매업
- 제9조 (정관 공포) 정관의 변경사항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하고 이사장의 공포로 발효한다.

[본조신설 2008.12.30] (개정 2012.5.22)

- 제10조 (개방이사추천위원회의 구성) ① 이사장은 개방이사 및 감사의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(재직임원의 경우 임기만료 3월전)에 대학교평의원회 의장에게 개방이사추천위원회(이하 "추천위원회"라 한다)의 구성을 요청하여야 한다.
 - ② 추천위원회 구성을 요청받은 대학교평의원회 의장은 법인과 대학교 및 전문대학 평의원회에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.
 - ③ 추천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자격을 갖춘 자로 구성한다.
 - 1. 정관 제18조제1항제1호 내지 제2호에서 규정한 자는 대학평의원 또는 대학평의원과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하는 자로 한다.
 - 2. 정관 제18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한 자는 「사립학교법」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이사장이 추천하는 자로 한다.
 - ④ 이사장으로부터 추천위원회의 구성을 요청받은 대학교평의원회 의장은 요청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추천위원회 구성을 완료하여 이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 - ⑤ 추천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추천위원회가 구성된 날부터 선임대상 개방이사 및 감사의 취임을 관할청으로부터 승인받은 날까지로 한다.

[본조신설 2007.12.28]

제11조 (개방이사 및 감사 추천) 추천위원회의 구성을 통보 받은 이사장은 법인 정관 제17조 및 제17조의 2 규정에 의거 추천위원회 위원장에게 개방이사 및 감사 추천을 요청한다.

[본조신설 2007.12.28] (개정 2015.2.16)

- 제12조 (추천위원회 위원장) ① 추천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을 둔다.
 - ② 위원장의 임기는 위원의 임기와 같다.
 - ③ 위원장은 추천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.

[본조신설 2007.12.28]

제13조 (개회 및 의결정족수) 추천위원회는 위원정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위원 정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[본조신설 2007.12.28]

- 제14조 (개방이사 및 감사후보) ① 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개방이사 및 감사 후보는 이법인의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자로서 「사립학교법」 제22조의 규정에 의한결격사유가 없는 자이어야 한다.
 - ② 개방이사 및 감사 후보의 추천시에는 후보의 학력, 현직 및 경력 등 주요인적 사항과 추천사유 등을 명기하여야 하며 추천시 필요한 서류는 추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.
 - ③ 추천위원회는 필요시 후보자에 대한 출석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
[본조신설 2007.12.28]

- 제15조 (간사) ① 추천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둘 수 있으며, 대학교평의원회의 간사가 겸직한다.
-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정리하며 회의에 출석하여 보고할 수 있다. [본조신설 2007.12.28]
- 제16조 (회의록 등) 추천위원회의 회의결과는 회의록에 작성하여 보존하고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하여야 한다.

[본조신설 2007.12.28]

제17조 (기타 세부사항) 정관 및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추천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추천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07.12.28]

제18조 (시행규정의 제정 및 개폐)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 및 폐지한다. (개정 2007.12.28)

	부	칙				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1992년 ② (경과규정) 이 규정의 시행이전			의하여	처리된	것으로	본다.

부 칙

이 규정은 1992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1995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1997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경과조치) 이 규정의 시행이전에 집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0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1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①이 규정은 2004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- ②(경과규정) 이 규정 이전 재직 중인 상임이사는 이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한다.

부 칙 (학법대우 제05-414호:2006.2.21)

이 규정은 개정공포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학법대우 제07-63호:2007.4.10)

이 규정은 개정공포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학법대우 제07-391호:2007.12.28)

이 규정은 개정공포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학법대우 제08-329호:2008.12.30)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개정공포일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이전에 개정된 법인 및 각급학교의 사무기구와 정원에 관련된 사항은 이 규정 제9조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.

부 칙 (학법대우 제11-122호:2011.5.24)

이 규정은 개정공포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학법대우 제11-226호:2011.8.23)

이 규정은 개정공포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학법대우 제12-91호:2012.5.22)

이 규정은 2012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학법대우 제13-221호:2013.10.18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학법대우 제14-381호:2015.2.16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